

# 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

제정 2025.05.08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소수집단 학생이 대학생활 및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정의)

1. ‘소수집단’이라 함은 장애학생, 외국인 유학생, 다문화가족학생,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,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중 대학에 소수집단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.

## 제3조 (담당부서 및 지원체계)

소수집단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인력을 둔다.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장애 학생 : 장애학생지원센터
2. 외국인 유학생 : 교무처
3. 다문화가족 학생 : 학생처 학생팀
4.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 : 학생처 학생팀
5.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: 학생처 학생팀

## 제4조 (사업운영)

- ① 대학은 소수집단 학생을 입학 때부터, 재학 중, 졸업 시까지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.
- ② 담당부서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수행, 평가 및 환류한다.
- ③ 담당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 및 계열(학과)에 전달하고,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④ 해당부서 및 계열(학과)는 소수집단 학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담당부서에 알리고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.
- ⑤ 학생처는 학생의 입학한 후 한 달 이내에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을 안내하고, 재학동안 소수집단 학생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득한 후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.

## 제5조 (지원범위)

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.
2. 대학생활 및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.
3. 상호이해 증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항.
4. 도우미(멘토)제도 및 자원봉사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5. 소수집단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6.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 (기타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수집단학생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05.08.)

제1조 (시 행 일)

이 지침은 2025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